

HPAI 예방을 위해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 필수

1. 조류인플루엔자 정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칠면조·오리 등의 가금 및 야생 조류에 주로 감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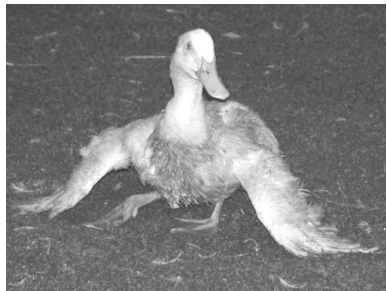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임상증상

처음에는 사료섭취량이 줄면서 침울하거나 졸다가 급격한 폐사가 일어나며, 죽기 직전에 벼슬이나 다리에 청색증 등의 증상과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을 보인다.

산란중인 종오리에서는 먼저 사료섭취량이 급격히 줄고 약간의 호흡기증상을 동반하며, 육용오리는 사료섭취량이 갑자기 감소함과 동시에 10% 내외의 폐사율을 보인다.



▲ 벼슬청색증 및 안면부종



▲ 파행 및 선회



김 동 욱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과 수의사무관

3. HPAI 전염경로

주로 직접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며, 감염된 닭의 분변 1g에는 십만~백만 마리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있다. 이러한 분변이 오염된 차량(특히 분뇨차량), 사람, 사료, 사양 관리 기구 등을 통해 전파되며, 장거리 전파는 야생철새의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4. HPAI 세계적 발생 추이

- '03.11~'08.12월 현재까지 고병원성 A(H5N1)는 가금류에서 총 48개국 6,506건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에는 발생국가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03~'08년 : 아시아(21 개국, 4,673건), 유럽(15개국, 616건), 아프리카(12개국, 1,217건)
 - 2006년 56개국 ⇒ 2007년 28개국 ⇒ 2008년 12.10일 현재 22개국

※ 사람(중국·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서는 387명 감염되어 245명 사망

- '08년 상반기 우리나라 주변국을 살펴보면 일본 야생 백조, 러시아 방사 가금류, 중국 사육 조류에서 발생이 있었으며, 최근 고병원성 시는 태국(11.10), 베트남(10.30), 라오스(11.8), 인도(11.21), 방글라데시(12.2), 홍콩(12.15), 중국(12.16)에서 발생한 바 있다.

5. 정부의 주요 예방대책

■ 기본방향

- 동절기 특별방역 ⇒ 연중 상시 방역체제로 전환하여 방역대책을 강화하여 추진
- 농가 신고에 주로 의존하는 예찰 ⇒ 정부가 미리 검색해내는 능동적 예찰로 전환하여 추진
- 초동방역능력 강화하여 발생시 신속대응으로 조기근절
- AI 검진능력 제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방역능력 선진화

■ 연중 상시방역으로 발생위험 최소화

- 유입가능 경로별(철새→뒷새→닭·오리)예찰(AI 재발방지대책 및 '08.하반기 AI 예찰계획 기준)

구분	검사대상	검사시기	검사횟수	검사물량※	검사항목	검사기관
관리지역 임상예찰	집중관리지역 (9시도 23시군)	3-4월/10-11월 5-9월/12-2월	주1회 격주 1회	전 해당농가	임상예찰 전화조사	시·군 주관
종오리농장 임상예찰	종오리 농가 (84개소)	연중	매일	전 해당농가	전화조사	한국오리협회
종오리 검사	종오리농장 (84개 483계군)	3-4월, 6-7월, 9-10월, 12월	년 4회	7,728점(항원) 38,640점(항체)	항체검사 항원검사	시도방역기관, 검역원(확인)
육용오리검사	오리농가(20수 이상) 1,586호	3-4월, 6-7월, 9-10월, 12월	년 4회	31,720점	항원검사	시도방역기관, 검역원(확인)
친환경 이용 오리예찰	오리농법이용농가 (사육통계 파악중)	8-9월	년 1회	전 해당농가	임상예찰 항원항체검사	시도방역기관, 검역원(확인)
야생조류 분변검사	철새도래지 41곳 농장인근 하천 22곳	1-5월 9-12월	월별 (9개월)	9,975점	항원검사	검역원
야생조류 포획검사	철새도래지 41곳 (야생조류 13종)	연중	-	1000수 ('09년, 500수)	항체검사 항원검사	검역원
재래시장 가금류검사	전국상설재래 시장(약 80개소)	3-4월 9-10월	년 2회 (반기별)	1,600점 이상	항원검사 항원항체	검역원
시위험지역 돼지검사	철새도래지(41)/ 집중관리지역(22) 인근양돈장	1-5월 9-12월	년 2회	2,520두	항원검사	검역원
수입사료 원료검사	수입사료원료 하역업체(16곳) 사료공장(28곳)	5-6월 9-12월	년 2회 " "	200점 ('09년 250점) 100점	항원검사 항원검사	검역원 검역원
관상조류 사육농가검사	관상조류사육농가 (20수 이상) 56곳	1-5월, 9-12월 3-4월, 9-10월	주 1회 년 2회	전 해당농가 896점	전화예찰 항원검사	시·군 시도방역기관, 검역원(확인)
H5/H7형 LPAI 항체검사	원종계장 20호	120일령-산란전 (1년내 추가검사)	2회(계군당)	3,200점	항체검사	검역원
	종계장 262호	"	"	15,720점	항체검사	시도방역기관
	신란계농장(농기당 2.5 동)1814호중 215호	연중 (3천수이상농가 우선)	년 2회(반기별) [반복검사]	12,900점	항체검사	시도방역기관
	육계 농가	연중	-	-	임상예찰	-
계	토종닭 농가 (사육통계 파악중)	연중	년 2회(반기별) [반복검사]	-	항체검사	시도방역기관
임상예찰 2, 모니터링 10						

- AI 방역관련법령 준수 지도·감독 및 불법사례 단속 강화
 - 가금 사육농가와 가축·사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및 소독실시기록부 비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농가 행정처분 및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40~100%)
 - 재래시장, 닭집 등에서의 불법적인 가금류 도축·판매 금지 지도·단속 강화

■ 제도개선을 통한 방역체계 선진화

- 비전문 사육시설, 재래시장 닭·오리 등 방역취약 대상 관리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 가금류의 판매목적 자가도축 금지(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 오리사육업 등록대상 확대 및 종오리업 등록 신설(축산법령 개정)
 - 사육업 등록(축사면적 기준) : (현행) 300㎡ → (개정) 50㎡
 - 종오리업 등록 신설 : 종축업에 종오리업 추가
- 방역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한 “AI SOP” 개정
 - 의심축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 및 오염지역 내 농가별 공무원 배치 등을 통한 이동통제 강화
 - 도심지, 소규모 사육농원(가정) 방역요령(SOP) 추가
 - 재래시장에서의 AI 발생시 폐쇄 또는 사용제한 조치 등 세부방역실시요령 신설
 - 역학조사 및 초동방역시 분변 운반차량(처리장) 우선 방역조치
 - 언론의 방역상황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와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별 언론설명요령 마련

■ 교육·홍보·점검 등을 통한 방역능력 제고

- 시·도 가축방역담당 공무원 등의 AI 방역능력 제고
 - 농식품부 주관 AI 발생 대비 도상 연습(CPX) 실시(10월)
 - 농업연수원 교육과정에 「AI 현장방역반」과정 신설하여 관련법령, 방역실시요령(SOP), 언론대응요령 등 교육
 - 가축, 분뇨, 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유관기관·단체 합동 방역교육 실시
- 닭·오리 도축검사 공영화(중장기 과제로 추진)
- AI 상시방역 수행을 위한 시·도 방역담당자 기술교육
 - H5/H7 HI 검사 시도 이관에 따른 기술교육 실시(9.23, 총16명)
- 검역원 주관 AI 방역업무 공무원 방역교육
 - 지방자치단체 상황반장급(방역과장) 등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 검역원 '08년 HPAI 발생지역 현장 방역홍보
- 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한 가금 사육농가 대상 홍보
- 야생조류 집단폐사 신고·검사 체계 운용
- 상시방역 이행실태 농식품부와 합동 점검

6. AI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 조치해야 할 주요사항

■ 사람에 대한 차단방역·소독

○ 농장주 및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행동수칙

- 철새도래지와 철새 등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인근 소하천, 타 농장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가축 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낙곡(수확 농지에 떨어져 있는 곡식) 등 야생조류의 먹이가 있어 야생조류의 분변이 신발에 묻을 수 있는 농지(논 또는 밭 등)의 방문을 자제 ⇒ 부득이 방문 했을 경우

☞ 귀가 시 농가 입구에서 신발을 소독수에 담근 후 깨끗하게 청소한 후 손을 세척

☞ 축사 출입 시 농장전용 장화를 갈아 신고 계사의 각 동의 입구에서 반드시 2차 소독

- 양계장의 입구 및 각 계사 입구에 소독조는 주당 2~3회 소독약을 갈아주어야 한다.

-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하고 소독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 소독시설 미설치 및 소독미실시(기록부 미작성) 과태료부과,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 출입자에 대한 조치

- 농장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소독의 생활화 및 수의사, 동물약품상, 축사 수리인력, 왕겨배달업자, 사료배달업자, 우체부, 친척 등에 대하여 농장입구에서 신발, 손 소독 실시

■ 차량·장비에 대한 차단방역 및 소독

-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차량과 장비 등은 소독과 세척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출입구에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철새도래지 또는 소하천 주변에 논, 밭 등을 경작하고 있는 농가는 장비나 차량에 대한 철저한 세척과 소독 실시 및 손과 발, 의복소독과 교체하고 농장과 축사에 출입해야 한다.

- 다른 농장에서 사용하던 축산기구, 장비나 차량은 가급적 빌려오지 말아야 한다.

-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농장입구에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철새 등 야생조류에 대한 차단방역

- 철새 및 텃새 등 야생조류가 축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은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

- 사료창고, 분변 보관장 등에 그물망이나 방충망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항상 닫아 두어 야생조류 등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 야생조류의 분변을 밟은 사람 등이 농가를 출입할 수 있으므로 추수기에 가금 사육농가 주변 논, 밭 등에 철새 등 야생조류의 먹이(볍씨 등)를 제거하여야 한다.

■ 쥐, 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대한 차단방역

- 쥐, 고양이 등이 계사를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을 막고 구서작업을 해야 한다. 양계